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상변동 시 신고 및 환수 등 규정 신설〉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5787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정 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출자 : 정부
2. 제출일 : 2025. 12. 31.
3. 회부일 : 2026. 1. 2.

II. 제안이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상 변동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신상 변동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제대군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환수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 외에도 직업교육훈련지원비, 교육지원비 등에 대한 환수, 국세강제징수 및 결손처분(缺損處分)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신상 변동의 신고(안 제4조의2 신설)

- 1)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2)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상 변동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원결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의 환수 및 면제(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 4 신설)

- 1) 국가보훈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지원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2)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지원을 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도록 함.

IV. 검토의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7개 보훈 관련 법률은 신상변동 신고, 과오급금의 환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 등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반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함)은 동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타 보훈 법률과의 비교 >

신상변동 신고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¹⁾
	참전유공자법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독립유공자법	제6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보훈보상자법	제5조(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
	5·18유공자법	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고엽제법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대군인법	-

환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	국가유공자법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²⁾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³⁾
	참전유공자법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제37조(반환의무의 면제)
	독립유공자법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보훈보상자법	제68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69조(반환의무의 면제)
	5·18유공자법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
	고엽제법	제25조(수당등의 환수) 제26조(반환의무의 면제)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
	제대군인법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7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 현재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법」에 따라 제대군인에게 직업교육 훈련지원비, 전직지원금, 교육지원비, 의료지원비, 진료비, 법률구조 지원비 등을 지원 중이나, 「제대군인법」에는 전직지원금에 대한 환수만 규정⁴⁾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환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⁵⁾에 따라 실시 중이며, 신상변동 신고 및 반환의무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은 부재함.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 또는 전직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 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이자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법상 지원금의 종류 및 환수 근거 >

구분	내용	환수 근거
전직지원금 (제18조의2)	실업 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최장 6개월간 지급 * (장기) 월 81만원, (중기) 월 58만원	「제대군인법」 제18조의3
직업교육훈련 지원비 (제13조제1항)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전역예정자 포함)에게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교육비 등 지원 * 외국어, 자격증 등 수강료 지원(150만원)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지원(120만원)	「공공재정 환수법」 제8조
교육지원비 (제19조)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50%) 또는 고교취학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지원(전액) *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특목고(사립), 자사고 등 무상 교육 대상이 아닌 사립학교에 한하여 지원	
의료지원비 (제20조)	① 경상이자 상이처 전액 국비진료(보훈, 위탁병원) ② 군복무 중 발병·악화된 중증질환 진료비 50% 감면 (보훈, 위탁병원)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보훈병원 진료비 50% 감면	
진료비 (제20조의3)	자연재난 등 발생으로 보훈병원 외 의료기관에 진료 위탁 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 50% 감면	
법률구조지원비 (제23조의2)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 지원(평균 36만원)	

□ 이에 개정안은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상변동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신상 변동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제대군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환수 및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 외에도 직업교육훈련지원비, 교육지원비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⁶⁾ 지원을 받은 자의 책임이

6) 안 제23조의3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의 부정수급 반환 및 추가징수’는 「국민 평생

없는 사유로 지원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지원금 환수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 된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 복무 제대군인(이하 “중·장기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를 따르고 있으므로,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부정수금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용자의 제한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용자가 제한되는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부정수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거짓자료 작성·제공 등을 함으로써 다른 자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용자를 받게 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은 자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금액 및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 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4.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

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관련 조문

제24조(지원 정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24조 또는 제25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6.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원결정의 취소나 기록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삭제 <2016. 1. 6.>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①·② (생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인적정보를 관리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

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
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군인(이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로 지도와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 또는 전직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국가보훈부장관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직
지원금을 환수하고, 이를 반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는 경
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
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
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3(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
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 받은 제13조에 따른 직업교
육훈련지원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는 제
외한다), 제18조의2에 따른 전직
지원금, 제19조에 따른 교육지
원비, 제20조에 따른 의료지원
비, 제20조의3에 따른 진료비,
제23조의2에 따른 법률구조지원
비(이하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가 받은 직업교육훈련지원비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교육훈련지원비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

<신 설>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교
육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지원

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
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
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제23조의4(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제23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23조의3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직업교육훈련지원비등의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 신상 변동
신고, 취업지원-----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 <u>전직 지원금의 지급 중단과 환수, 지 원 정지 및 법 적용대상으로부 터의 배제와 관련된 자격의 확 인과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을 위하여 금융정보등, 가족관 계등록정보·소득금액증명·지 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국민연금·출입국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 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u> ② ~ ④ (생 략)	----- <u>전직지 원금의 지급 중단, 직업교육훈 련지원비등의 환수, 지원 정지, 결손처분</u>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문 의 처
02)6788-5110

참고 1

타 보훈법률 및 「제대군인법」 개정안 비교

신상변동 신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환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제37조(반환의무의 면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69조(반환의무의 면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당등의 환수) 제26조(반환의무의 면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3조의3(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의 환수) 제23조의4(반환의무의 면제)

참고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직업훈련

구분	직업교육훈련(제1항)	직업능력개발훈련(제2항)
지원주체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지원내용	○ 대상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예정자 (국방부 전직기본교육 수료) ○ 내용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전역 후 3년 이내, 150만원 한도) ① (내용) 취·창업 경력목표와 연관되는 공채시험, 국가기술·기능 자격증 취득 과정 등(예: 공무원학원, 어학학원) ② (방식) 대상자 본인에게 계좌입금 ③ (장소) 정부공인 교육훈련기관 등 ☞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평생 3과목 이내, 120만원 한도) ① (내용) 취·창업 관련 전문지식 및 실무교육, 국가기술·기능 등 자격증 과정 ② (방식) 대상자 본인에게 계좌입금 ③ (장소) 위탁교육기관(대학, 전문교육기관) ☞ 사이버교육 (연 12과목 이내, 교육비 전액) ① (내용) 취·창업에 필요한 공채시험, 자격증 취득, 외국어(회화) 등 ② (방식) 업체에 계약금 지급 ③ (장소) 브이넷(제대군인 사이버연수원)	○ 대상 ☞ 15세 이상 75세 미만 국민 ☞ (제외) 공무원, 군인, 연매출 4억원 이상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원 이상인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종사자 등은 제외 *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전직기본교육 수료)는 보훈부 추천을 통해 신청 가능 ○ 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계좌 발급 후 5년 이내, 300만원 한도) ① (내용) 자격증·직업훈련 등 집체교육, NCS 직무(경영, 보안 등) 온라인교육 등 ② (방식) 대상자 본인에게 계좌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훈련비의 45~85% 지원 ③ (장소) 고용부·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선정한 훈련기관
환수근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평생직업능력법」 제56조